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383

발의연월일: 2022. 4. 25.

발 의 자:배준영·구자근·박완수

서병수 · 양금희 · 정우택

조명희 · 조수진 · 최춘식

허종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,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림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, 이 중 다수가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2021년 국내총생산 성장률(4.0%)에 비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성장률은 약 2.7%에 불과하고, 농촌의 일손부족 및 고령화 현상이 점 차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.

이에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과 그에 부수하는 특례들의 일몰을 각각 3년 연장 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 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(안 제72조제1항).
- 나.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 자소득에 대한 비과세·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함(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).
- 다. 농업용·축산업용·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(안 제10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7년 1월 1일"로 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, "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7년 1월 1일"로 하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	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
세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	세 과세특례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	
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	
인세는 <u>2022년 12월 31일</u> 이전	<u>2025년 12월 31일</u>
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	
인세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	
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	
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	
익[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	
한 당기순이익(當期純利益)을	
말한다]에 「법인세법」 제24	
조에 따른 기부금(해당 법인의	
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	
한다)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	
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	
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	
대비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	
관련된 것만 해당한다)의 손금	
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	
액에 100분의 9[해당금액이 20	
억원(2016년 12월 31일 이전에	

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0분의 12]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하 이 조에서 "당기순 이익과세"라 한다)한다. 다만,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 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.

#### 1. ~ 8. (생략)

# ② ~ ⑥ (생 략)

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) 농민·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·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 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·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

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"배당소득등"이라 한다) 중 2022 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,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 아니한다.

- 1. <u>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</u> <u>12월 31일</u>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: 100분의 5
- 2. <u>2024년 1월 1일</u>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: 100분의 9

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지원과세 등) ① 농민·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·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 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(1명당 3천만원

<u>2025</u>
년 12월 31일
1.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
12월 31일
2. 2027년 1월 1일
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
저율과세 등) ①

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,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제

이하의 예약금만 해당하며, 이	
하 "조합등예탁금"이라 한다)에	
서 2007년 1월 1일부터 <u>2022년</u>	<u>2025년</u>
<u>12월 31일</u> 까지 발생하는 이자	<u>12월 31일</u>
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, 2	<u>2</u>
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	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
<u>월 31일</u>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	<u>31일</u>
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	
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	
5의 세율을 적용하며, 그 이자	
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	
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	
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	
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	
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
② <u>2024년 1월 1일</u> 이후 조합	② 2027년 1월 1일
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	
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	
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	
9의 세율을 적용하고, 같은 법	
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	
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	
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	
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
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
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<u>8</u> ) ①

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
1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<u>2025년 1</u>
2월 31일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